

미국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on Child Care Expenses of Single Mother Families in the U. 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박선욱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 : Sun Wook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Using the 1999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NSA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 care expenses and examined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of single mother families in the U. S. In this study, 4,676 single mother families with children aged twelve and under are included for the analytical sample. About half of all single mother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 12 had some amount of child care expenses in 1999. Monthly child care expenses for those who had child care expenses was an average of \$255 and it accounted for about 15 percent of their family earnings. The profile of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showed that about one-quarter of single mothers received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one-fifth received free child care by relatives and about 40 percent received child support payments from nonresident fathers. Tobi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child care expenses were mother'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the numbers of children aged 0-5, family income, the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and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주제어(Key Words): 편모가계(single mother families), 자녀보육비용(child care expenses),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I. 서론

지난 30년 동안 편모가계의 괄목할만한 증가는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계 중 10 퍼센트가 편모가계였는데, 2003년에는 그 비율이 23퍼센트로 증가하였다(U. S. Census Bureau, 1971, 2005). 이혼율의 상승과 미혼모의 증가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편모 슬하에서 생활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 한편 많은 편모가계가 빈곤층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문제와 경제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계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는 적절한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어머니 혼자 가계를 꾸려가는 편모가계에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면 어머니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Hao & Brinton, 1997), 이는 편모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은 편모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평균 보육비용은 양부모가계에 비해서 낮지만, 편모가계의 가계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육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양부모가계에 비해서 훨씬 높아(편모가계, 16% vs. 양부모가계, 7%) 보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Giannarelli & Barsimantov, 2000). 편모가계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편모가계인 경우 보육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19%) 보육비 부담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보육비 부담은 보육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보육환경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Meyers, Han, Waldfoegel, & Garfinkel, 2001)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편모가계 중 이혼가계보다 미혼모가계인 경우에 자녀아버지로부터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payment) 지원이 비교적 낮고 취업률도 낮아 보육비 지출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모의 결혼상태,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의 가구특성은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편모가계들이 보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의 조부모나 친척,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 편모들은 경제적 공급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역할 수행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친인척의 보육서비스 지원은 가계의 보육비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편모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어

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편모가계의 거의 60%가 자녀의 조부모, 친척, 친구, 정부기관이나 다른 조력기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관련 지원을 받고 있고(Giannarelli, Adelman, & Schmidt, 2003), 약 20%의 저소득 편모가계가 친인척으로부터 자녀보육도움을 무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nts & Avery, 1998). 이러한 핵가족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은 편모가계의 자녀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편모가계의 보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은 수준이나 미국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연방정부의 보육지원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Head Start와 같은 아동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한시적 빈민지원) 등의 보육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인 방법으로 제공된다. 이처럼 편모의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제공 프로그램의 시행은 자녀보육에 대한 대체적 자원이 부족한 편모가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복지지원정책의 변화 속에서 정부의 보육비 지원방식이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해서, 편모가계의 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제적으로 편모가계가 받고 있는 보육관련 지원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보육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보육시장에서 시간당 보육료의 증가가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가계를 대상으로 특히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한 자녀보육비지출 분석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전국규모 설문조사인 1999년도 NSAF(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자료를 이용하여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대한 실태를 가구특성 별로 알아보고,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가족 외부로부터의 재정적·사회적 지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 실태와 그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보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편모가계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입안에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이혼율의 증가와 저출산율 등으로 자녀보육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관련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

양부모가계에 비해 제한된 경제 자원 및 시간 자원을 가지고 있는 편모가계에게 있어서 자녀보육비용은 심각한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NSAF(1997)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가계의 자녀보육비지출 실태에 대해서 연구한 Giannarelli 와 Barsimantov(2000)는 취업한 편모가계의 경우 자녀보육비용으로 월평균 \$258을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편모 임금의 1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저소득층 편모가계는 그보다 낮은 월평균 \$230을 보육비로 지출하지만, 편모임금 대비 보육비 비율은 19%를 차지해 저소득층이 아닌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보육비 지출에 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은 자녀보육비 지출이 어머니 취업상태, 어머니 결혼상태, 어머니 교육수준, 미취학 자녀수, 가구소득, 공공부조의 수혜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먼저, 어머니 취업과 자녀보육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lank(1988)는 편모가계가 취업에 대한 고정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편모는 홀로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보육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취업과 보육비용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Connelly & Kimmel, 2003a, 2003b; Han & Waldfogel, 2001; Woodhouse, 2001)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당 보육비용과 어머니 취업과의 관계 연구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로 다루었는데, 시간당 보육비용이 증가할수록 편모의 취업이 감소하였다. 두번째는 주당 보육비용 또는 월보육비용과 어머니 취업과의 관계 연구인데, 이들 연구에서는 취업 편모가 미취업 편모보다 주당 또는 월 보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1992-1993) 자료를 이용해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용을 분석한 Connelly과 Kimmel(2003a)의 연구에서는 종일제 근무를 하는 편모가 시간제 근무를 하는 편모보다 주당 보육비 지출이 더 많았는데, 이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편모들은 종일제 근무를 하는 편모들에 비해 시설보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이용시간에 제약이 없는 친인척보육(relative care)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편모의 결혼상태(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에 따른 보육비 지출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에는 Lino(1994)의 연구가 있는데, 편모가계의 소비패턴을 연구한 그의 연구에서는, 미혼모가계가 이혼 및 별거가계나 양부모가계보다 보육비 지

출이 낮으며, 그 이유는 미혼모의 낮은 취업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미취학 자녀의 존재유무나 그 수에 따라서도 보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는데, Han 과 Waldfogel(2001)은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계가 없는 가계보다 더 많은 보육비 지출을 하며, 이는 5세 이상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시설의 시간당 보육료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offerth & Wissoker(1992)는 자녀수가 보육서비스의 종류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보육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시설보육을 이용하기보다 베이비시터나 친지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모두 보육시설에 보낼 때보다 베이비시터나 친지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원리(economic of scale)로 인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보육비 지출과 관계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수료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편모가 고졸 편모보다 보육비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구소득과 자녀보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Capizzano, Adelman, & Stagner, 2002; Giannarelli & Barsimantov, 2000; Smith, 2002)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보다 자녀보육비 지출의 절대액은 낮았지만, 보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먼저, 1997년도 SIPP 자료를 이용해 자녀보육비 지출에 대해서 조사한 Smith(2002)의 연구에서는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계 중 33%가 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 지출을 하는 가계의 주당 평균 보육비용은 자녀 한명당 \$71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가구소득이 빈곤선(poverty threshold) 이하인 빈곤가계는 비빈곤가계보다 보육비지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지출비용도 적었지만, 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은 빈곤가계가 훨씬 더 높았다(빈곤가계, 21% vs. 비빈곤가계, 7%). 한편 Capizzano 와 Adams(2003)는 2002년도 NSAF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는 다른 소득수준의 가구에 비해서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친인척이 보통 낮은 비용이나 대가없이 자녀를 돌봐주기 때문이라고 나타나, 저소득가구에게 있어 보육비용은 자녀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보육비 지출과 가계의 공공부조 수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았는데, Connelly 와

Kimme(2003b)의 연구에서 공공부조의 한 종류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지급 받고 있는 편모가계가 AFDC를 받고 있지 않는 편모가계에 비해서 보육비지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계는 시설보육보다는 친인척보육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인척의 무료보육지원과 가계의 자녀보육비지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Meyers *et al.*(2001)의 연구가 있는데, 편모가계의 자녀보육지원에 대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친인척보육과 같은 비정규적인 형태의 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 저소득 편모가계의 보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편모의 특성이나 다양한 가구특성에 따라 자녀보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모의 취업과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태조사에 그쳤고 특히 편모가계가 받는 재정적·사회적 지원이 보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혼률 증가로 인해 한국의 편모가계의 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한 자녀보육비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한 보육비지출 연구도 그 수가 제한적이었는데,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지경(2005)은 한국 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5차(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보육 시설 이용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 시의 지출비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월평균 6만5천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27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출수준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가계가 더 많은 보육비용을 지출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가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고, 보육비 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와 강성희(2002)는 7세 이하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기혼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하였는데, 80%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하루에 8-9시간을 맡기는 종일제보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월평균 보육비용으로는 30만원 이상의 비율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개인의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소득 대비 보육비용이 적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만 5세 이하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수준과 결정요인을 조사한 백선희와 조성우(2005)의 연구에서는 전체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비는 월평균 12.6만원이었고 이것은 총가구소득의 6.6%를 차지하였다. 보육·교육기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월평균 2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가구소득의 11.3%를 차지하였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육·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의 자녀보육비지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보육비와 교육비(학원, 학습지, 개인 및 그룹과의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합한 비용을 기준으로 그 지출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보육비지출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편모가계의 자녀보육에 대한 재정적·사회적 지원

편모가계는 가족, 친지, 친구, 정부, 보육기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자녀보육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한 보육비용 지원이나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이러한 몇 연구들도 지원의 형태나 지원수준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Giannarelli *et al.*, 2003; Hao & Brinton, 1997; Hunts & Avery, 1998; Jayakody, Chatters, & Taylor, 1993).

먼저, 1999년도 NSAF 자료를 이용해 자녀보육지원제도를 연구한, Giannarelli *et al.*(2003)은 자녀양육 및 개발기금(CCDF;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ies), Head Start 등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 직장으로부터의 보육지원금,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부로부터의 보육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가계가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친지로부터 실질적인 보육도움을 무료로 받고 있는 가계도 많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가구(소득이 빈곤선의 200% 미만)가 다른 가구들보다 이러한 재정적·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고, AFDC나 TANF와 같은 공공부조를 수급한 가구들이 공공부조를 수급하지 않은 가구들보다 이러한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가 5세 이상의 자녀만 있는 가계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5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가구들의 보육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미국 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도 취학아동을 위한 것보다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5세 이상의 자녀만 있는 가

구는 친지의 무료보육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령의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종일보육이 필요하지 않고, 어린 아동을 돌보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보육 부담이 적어 친지들이 보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CCS(National Child Care Survey) 1990년 자료를 이용한 Hunts 와 Avery(1998)의 연구에서는 친인척보육지원이 시간자원이 부족한 홀부모 가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친인척보육지원은 가정의 취업상태, 자녀의 연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가장이 취업한 가구,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저소득가구들은 다른 가구에 비해 더 긴 시간동안 친인척보육지원을 받았다. 친인척보육에 대한 대가는 선물이나 식사와 같은 비금전적인 것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양부모가계와 홀부모가계의 친인척 네트워크와 지원의 형태를 연구한 Jayakody *et al.*(1993)은 친인척지원의 형태를 재정지원, 보육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원이 결혼상태에 따라 다양함을 나타내었다. 양부모가계, 이혼/별거, 사별가계보다 빈곤율이 높은 미혼모가계가 친인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고, 자녀보육지원에서는 미혼모가계와 양부모가계가 이혼가계보다 보육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친인척보육지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친인척의 무료보육 지원은 저소득, 취업모, 편모가계에게 보육비지출을 경감시켜주어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지원형태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편모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를 연구한 Hao와 Brinton(1997)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아버지로부터 받는 자녀양육비는 편모가계의 중요한 소득원천 중의 하나이며 자녀양육비의 수령이 적절한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1997년에 미국 전체 편모가계 중 절반 정도가 자녀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었고, 평균 자녀양육비는 연간 \$3,795이었으며 이것은 이들 가구소득의 약 16%를 차지하였다(Sorensen & Zibman, 2000). 자녀양육비 수준을 이혼/별거한 편모가계와 미혼모가계를 비교한 한 연구(Argys, Peters, Brooks-Gunn, & Smith, 1998)에서는 이혼/별거가계의 68%, 미혼모가계의 44%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어서 미혼모가계가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자녀양육비 액수도 미혼모가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녀보육에 대한 재정적·사회적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경제적인 책임 뿐 아니라 양육의 책임도 감당해야하는 편모에게 정부나 기관 그리고 친인척의 지원

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나 친인척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통한 보육지원은 편모가계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미국의 정책 연구와 교육기관인 Urban Institute에서 표집한 1999년도 NSAF(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이다. NSAF는 미국의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로서 가계의 경제적 복지, 아동복지, 의료보장, 가족 구조, 사회사업, 재정보조, 정부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7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고 1999년에 2차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1999년도 NSAF는 미국의 13개주에 걸쳐서 총 40,874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자료 수집은 1999년 2월 15일에 시작해서 1999년 10월 초에 완료되었다. NSAF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각 가구의 MKA(Most Knowledgeable Adult)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MKA는 조사대상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연구에서 MKA는 주로 자녀의 어머니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999년도 NSAF에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가 추출되었고,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4,676 편모가구이다. NSAF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한 달 동안에 지출한 보육비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가 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가구의 모든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한 모든 보육서비스에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측정하였다. 자녀보육서비스의 종류로는 보육시설(Center-based care), Head Start 프로그램, 방과 후/전 교실(Before and/or After School Care), 친인척보육(Relative Care), 제 3자에 의한 가정보육(In-home Care by a None-Relative), 제 3자에 의한 가정 외 보육(Out-of-Home Care by None-Relative) 등이 포함되었다. 지출한 보육비용은 월보육비용 또는 주당 보육비용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주당 보육비용으로 응답한 것은 그 액수에 4.33을 곱하여 월보육비용이 산출되었다.

1999년도 NSAF는 충분한 양의 편모가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전국규모의 설문조사와는 달리 본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가구당 월보육비용, 보육비관련 재정지원, 무료친인척보육지원 등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편모가구의 재정적·

사회적 보육지원의 실태와 보육비지출에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2. 연구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에 따른 보육비 지출 실태와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χ^2 ,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Tobit 모델을 이용하였다. Tobit 모델은 종속변수가 양적인 변수이지만 일정한 영역(예를 들어 0 이하)에서는 관측될 수 없어서 제한된 값만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한적 종속변수모델 (limited dependent variables model) 이다(Maddala, 1992). 본 연구의 Tobit 모델에서의 종속변수는 '월평균 보육비용'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Y_i = \beta_0 + \beta X_i + \mu \quad \text{if } Y_i^* > 0$$

$$= 0 \quad \text{if } Y_i^* = 0$$

즉, $Y_i^* > 0$ 인 경우는 가계의 월평균 보육비용이 0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관찰 가능한 경우로서 Y_i 가 $\beta_0 + \beta X_i + \mu$ 으로 표시되며, $Y_i^* = 0$ 인 경우는 월평균 보육비 지출이 없어서 관찰 불가능한 경우로서 Y_i 가 0으로 표시된다. 본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 4,676가구 중에서 월평균 보육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213 (47.3%)이고, 월평균 보육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2,463 (52.7%)이다. 이 모델에서 Y_i^* 는 자녀보육비 지출이 없는, 즉 월보육비용이 0인 많은 가구들을 포함하여 분석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종속변수의 값을 정규 분포모형에 나열했을 때 좌측의 값이 왼쪽 절단(left-censored)된 형태를 띤다. Tobit 모델은 종속변수의 값이 0인 가구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편모가계의 가구특성과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는데, 가구 특성에는 어머니 연령, 어머니 결혼상태(미혼/이혼/별거/사별),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여부, 0-5세 자녀의 유무, 0-5세 자녀의 수, 가구소득, 공공부조 수령 여부가 포함되었다.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변수에는 보육비 재정지원, 자녀양육비 수령여부, 무료보육지원 변수가 포함된다. 보육비 재정지원 변수는 NSAF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측정되었는데, 첫 번째는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 지원은 정부 기관이나 프로그램, 보육기관이나 기타 조력기관, 편모의 직장, 그리고 이혼 등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아버지나 자녀의 조부모, 친지로부터의 보육비 지원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차등보육료제도에 의하여 보육비를 감면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차등보육료를 적

<표 1> 연구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만 나이	연속변수
	어머니 결혼상태	미혼모 = 1, 이혼/별거/사별 = 0	가변수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 0, 대학수료이상 = 1	가변수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 0, 취업 = 1	가변수
가구 특성 변수	0-5세 자녀의 유무	0-5세 자녀 있음 = 1, 0-5세 자녀 없음 = 0	가변수
	0-5세 자녀 수	0-5세 자녀의 수	연속변수
	가구소득	가계의 연간 세 전 총소득(달러)의 자연로그 값	연속변수
	공공부조 수령 여부	주립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ies), GA(General Assistance), 긴급보조금(Emergency Assistance) 등의 공공부조 수급 여부, 공공부조 수급함 = 1, 공공부조 수급하지 않음 = 0	가변수
독립 변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정부기관이나 프로그램, 보육기관, 직장, 자녀의 부, 자녀 조부모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차등보육료를 적용받음 = 1, 받지 않음 = 0	가변수
	자녀양육비 수령여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 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 수령함 = 1, 하지 않음 = 0	가변수
	무료보육지원	친인척으로부터 무료로 자녀보육서비스 지원 받음 = 1, 받지 않음 = 0	가변수
종속 변수	월평균 보육비용	가구의 모든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난 한달 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한 보육서비스에 지출한 비용(달러)	연속변수
	지출	보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퍼센트). 월평균보육비용에	연속변수
	비율	월평균가구소득을 나누어서 산출.	연속변수

용받았다면 보육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자녀양육비 수령여부 변수는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무료보육지원 변수는 친인척으로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자녀보육 지원을 무료로 받는 경우 1로 코딩되었다. 하지만 이 변수는 NSAF에서 조사 시에 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보육비 지출이 있으면서 무료보육지원도 같이 받는 가구는 포함되지 않아서 제한점이 있다. 각 설명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2세였고, 편모의 결혼상태는 미혼모인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혼한 경우가 34%, 별거한 경우가 16%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7%로 대학 수료 이상 42% 보다 많았다. 조사대상 편모들 중 56%가 종일제 근무를 하였고, 17%는 시간제 근무를 하여 약 73%가 취업한 상태였고, 나머지 27%는 미취업 상태였다. 분석대상 편모가계의 평균 가구원수는 약 3.6명이며, 총 자녀수는 약 2명이었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는 약 58%를 차지하였으며, 5세 이하 자녀수 평균은 .75로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가구소득은 연간 \$26,935이었고, 일인당 가구소득은 \$8,04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계 중 약 18%가 공공부조를 수령하고 있었고, 공공부조의 평균 수령액은 \$601이었다. 자녀보육 관련 지원을 살펴보면, 전체 편모가계 중 약 24%가 정부기관, 보육기관, 직장 또는 친인척을 통해서 보육비용 전액이나 일부분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41%의 편모가계가 같이 살지 않는 자녀 아버지로 부터 자녀양육비를 수령하였고, 그 수령액은 평균 연간 \$3,710이었다. 친인척으로부터 자녀보육서비스 지원을 무료로 받은 편모가계는 약 16%로 조사되었다.

12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한 지출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편모가계는 전체 조사대상 중 약 47%를 차지하였다.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의 월평균 보육비용은 \$255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로 나타났다.

2. 편모가계의 보육비 지출 실태

먼저, 자녀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와 보육비 지출이

<표 2> 조사대상 편모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N = 4,676)

변수	빈도(%)	Mean (SD)
가구 특성		
어머니 연령		32.24(8.10)
어머니 결혼상태		
이혼	33.8	
별거	15.9	
사별	3.7	
미혼모	46.6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미만	16.5	
고졸	40.8	
대학수료	28.4	
대졸 이상	13.2	
어머니 취업상태		2.39(.92)
미취업	27.2	
시간제 근무	16.6	
종일제 근무	56.2	
가구원수		3.62(1.45)
자녀 수		1.99(1.10)
5세 이하 자녀 있음	57.5	
5세 이하 자녀 수		.75(.79)
가구소득		\$26,935(24,822)
일인당 가구소득		\$8,040(7,390)
공공부조 수령합	17.8	
공공부조 수령액		\$601(1,697)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보육비재정지원	23.8	
자녀양육비 수령합	41.2	
자녀양육비 수령액 ^a		\$3,710(3,619)
무료보육지원	16.3	
자녀 보육비 지출		
보육비 지출 있음	47.3	
월평균 보육비용 ^b		\$255.00(226.56)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비율 ^b		15.44(14.56)

^a n = 1927.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자녀양육비 수령액을 산출하였다.

^b n = 1,900. 월평균 보육비용과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비율은 월평균보육비용이 \$1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없는 편모가계를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 보육비 지출이 없는 편모에 비해서 연령이 약간 낮았고, 대학수료이상 학력이 더 많았다. 편모의 취업상태는 보육비 지출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보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약 90%의 편모가 취업한 상태인 반면, 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계는 58%의 편모가 취업한 상태였다.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에서 5세 이하 자녀

〈표 3〉 보육비 지출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 수	보육비 지출 있음	보육비 지출 없음
가구 특성		
어머니 연령	31.55(7.42)	32.86(8.62)
어머니 결혼상태		
이혼	35.4%	32.3%
별거	15.1%	16.6%
사별	2.3%	5.0%
미혼모	47.2%	46.1%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미만	9.9%	22.3%
고졸	40.1%	41.5%
대학수료	32.7%	24.6%
대졸 이상	16.4%	10.3%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10.6%	42.1%
시간제	16.3%	16.9%
종일제	73.2%	41.0%
가구원수	3.40(1.33)	3.81(1.53)
5세 이하 자녀 있음	63.4%	52.1%
5세 이하 자녀 수	.79(.74)	.72(.83)
가구소득	\$30,591(25,701)	\$23,652(23,531)
공공부조 수령함	12.7%	22.3%
공공부조 수령액	\$384(1,357)	\$795(1,933)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보육비재정지원	39.2%	10.0%
자녀양육비 수령함	44.8%	38.0%
자녀양육비 수령액 ^a	\$3,801(3,670)	\$3,614(3,564)
무료보육지원 ^b		31.0%
<i>n</i>	2213(47.3%)	2463(52.7%)

주. 평균(표준편차)과 퍼센트가 제시되었음.

^a *n* = 1927.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자녀양육비 수령액을 산출하였다.

^b 무료보육지원 변수는 NSAF에서 자녀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를 둔 경우가 더 많았으며, 5세 이하 자녀수도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가 지출이 없는 가계보다 가구소득은 높은 반면, 공공부조를 수령하는 비율은 낮았고, 공공부조 수령액도 낮았다.

한편,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 중 약 40%가 보육비 재정지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계는 단지 10%만이 보육비재정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육비 지출이 없는 편모가계의 31%가 친인척으로부터 무료보육지원을 받았다. 이는 보육비재정지원이 이미 보육비지출이 있는 가계에 보육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보육비재정지원으로 가계의 보육비지출 전부를 충당하여 보육비지출이 없는 편모가계는 조사대상자 전체 중에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의 45%가 자녀양육비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비 지출이 없는 편모가계의 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비 수령액은 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가 연평균 \$3,801을 받았고, 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계는 \$3,614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4〉는 자녀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비 지출실태를 가구특성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 연령대별로 보육비지출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 편모인 경우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이 1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모가계의 월평균 보육비가 \$234로 이혼, 별거, 사별가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보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인 경우에 \$200의 가장 낮은 보육비지출을 하였다. 하지만 고졸 미만의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은 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보육비지출액은 낮지만 가계의 보육비부담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상태별로 보육비지출을 살펴보면, 종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275, 미취업인 경우에는 \$190로 약 \$85의 차이가 났다.

5세 이하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육비지출을 비교해보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가 5세 이하 자녀가 없는 편모가계보다 더 높은 보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5 vs. \$202),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비율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가 더 높았다(17% vs. 12%). 따라서 5세 이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가 보육비지출이 클 뿐만 아니라 보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보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월평균 보육비용은 증가한 반면,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연소득이 \$10,000 미만인 편모가계의 보육비는 \$129이고, 이 비용은 이들 가구소득의 31%를 차지한 반면 소득이 \$40,000 이상인 편모가계의 보육비는 \$337이고, 이들 가구소득의 8%를 차지해, 저소득가구일수록 보육비지출액은 낮지만 보육비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수령여부에 따라 보육비지출을 살펴보면, 공공부조를 수령하는 편모가계가 수령하지 않는 가계보다 보육비 지출을 적게 하였으나(\$191 vs. \$262),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은 공공부조를 수령하는 가계가 더 높았다(21% vs. 15%).

3. 편모가계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실태

편모가계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실태가 가구특성에

〈표 4〉 가구특성에 따른 월평균 보육비용 및 소득대비 보육비 비율

변수	n(%)	월평균 보육비용(달러)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비율(%)
어머니 연령			
만30세 미만	836(44.0)	254.84(215.45)	17.00(15.57)
만30 ~ 35세	486(25.6)	257.61(232.01)	14.97(14.37)
만36세 이상	578(30.4)	253.03(237.68)	14.97(14.37)
<i>F</i>		0.05	9.78***
어머니 결혼상태			
이혼	685(36.1)	273.53(263.07)	13.56(13.07)
별거	279(14.7)	277.42(250.83)	18.21(16.11)
사별	46(2.4)	253.26(254.09)	14.15(14.56)
미혼모	890(46.8)	233.80(180.49)	16.09(14.95)
<i>F</i>		5.07**	8.00***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미만	165(8.7)	200.15(168.55)	19.00(18.26)
고졸	761(40.1)	224.95(174.36)	15.07(13.69)
전문대졸	640(33.7)	260.29(212.25)	15.54(14.31)
대졸 이상	316(16.6)	347.94(341.43)	13.93(14.20)
<i>F</i>		26.38***	4.67**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143(7.5)	190.15(174.97)	16.75(17.72)
시간제	291(15.3)	187.69(170.13)	16.74(16.71)
종일제	1466(77.2)	274.69(236.93)	15.06(13.72)
<i>F</i>		24.85***	2.24
5세이하 자녀 있음	1213(63.8)	285.09(245.54)	17.31(15.37)
5세이하 자녀 없음	687(36.2)	201.87(176.46)	12.14(12.32)
<i>t</i>		61.06***	57.01***
가구소득			
\$10,000 미만	181(9.5)	128.64(97.93)	31.22(21.74)
\$10,000~20,000 미만	493(25.9)	206.47(146.76)	19.91(14.54)
\$20,000~30,000 미만	436(22.9)	256.18(198.10)	15.32(12.41)
\$30,000~40,000 미만	280(14.7)	270.69(203.30)	11.50(9.58)
\$40,000 이상	510(26.8)	337.14(310.22)	7.80(7.88)
<i>F</i>		39.85**	134.65***
공공부조 수령함	187(9.8)	190.85(197.26)	21.33(19.79)
공공부조 수령안함	1713(90.2)	262.01(228.49)	14.80(13.72)
<i>t</i>		16.77***	34.53***
<i>n</i> ^a	1,900(100%)	255.00(226.56)	15.44(14.56)

주. 평균(표준편차)과 퍼센트가 제시되었음.

^a *n* = 1,900. 〈표 2〉에서 보육비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2,213명 중 지난 달 월평균보육비용이 \$0인 편모가구와 결측치를 제외하였음.

따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보육비재정지원을 살펴 보면, 전체 4,676 편모가계 중 23.8%가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편모가계는 보육기관의 차등보육료제도, 정부기관, 보육기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 아버지, 편모의 직장 그리고 친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보육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편모가계와 받지 않는 편모가계를 비교했을 때, 편모의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가계에서 미혼모의 수가 더 많았다. 그리고 보육비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가계의 편모는 70%가 취업 중인 반면,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가계의 편모는 83%의 편모가 취

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모의 취업이 정부의 양육보조금(child care subsidies) 수령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eyers *et al.*,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가계의 가구소득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가계에 비해 낮았고, 공공부조를 수령하는 가구의 비율은 더 높았다. 이는 보육비재정지원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보편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한편, 친인척으로부터 보육서비스 지원을 무료로 받는 편모가계는 전체의 약 16.3%를 차지하였다. 보육비재정지원과

〈표 5〉 편모가계의 가구특성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단위: n(sd)

변수	보육비재정지원		무료보육지원		자녀양육비지원		액 수 ^b
	받음	받지 않음	받음	받지 않음	받음	받지 않음	
어머니 연령	29.94 (7.19)	32.96 (8.23)	30.92 (7.98)	32.49 (8.10)	33.09 (7.20)	31.64 (8.63)	.
어머니 결혼상태							
이혼	321 (28.8%)	1257 (35.3%)	234 (30.3%)	1344 (34.4%)	959 (49.8%)	619 (22.5%)	\$4683 (3947)
별거	179 (16.1%)	566 (15.9%)	103 (13.5%)	642 (16.4%)	262 (13.6%)	483 (17.6%)	\$3508 (3567)
사별	14 (1.3%)	160 (4.5%)	23 (3.0%)	151 (3.9%)	16 (.8%)	158 (5.7%)	\$1825 (1612)
미혼모	599 (53.8%)	1580 (44.3%)	404 (52.9%)	1775 (45.4%)	690 (35.8%)	1489 (54.2%)	\$2478 (2671)
χ^2	50.59***		15.04**		416.04***		$F = 55.85***$
어머니 교육수준 ^a							
고졸미만	146 (13.1%)	624 (17.5%)	126 (16.5%)	644 (16.5%)	205 (10.6%)	565 (20.6%)	\$2532 (2571)
고졸	478 (42.9%)	1430 (40.1%)	349 (45.7%)	1559 (39.9%)	799 (41.5%)	1109 (40.3%)	\$3400 (3267)
대학수료	354 (31.8%)	976 (27.4%)	193 (25.9%)	1132 (28.9%)	601 (31.2%)	729 (26.5%)	\$3757 (3464)
대졸이상	120 (10.8%)	496 (13.9%)	79 (10.3%)	537 (13.7%)	309 (16.0%)	307 (11.2%)	\$5272 (4763)
χ^2	23.78***		12.97**		96.85***		$F = 29.54***$
어머니 취업상태							
미취업	189 (17.0%)	1082 (30.4%)	155 (20.3%)	1116 (28.5%)	393 (20.4%)	878 (31.9%)	\$3515 (4007)
시간제	217 (19.5%)	560 (15.7%)	171 (22.4%)	606 (15.5%)	339 (17.6%)	438 (15.9%)	\$4028 (4115)
종일제	707 (63.5%)	1921 (53.9%)	433 (57.3%)	2190 (56.0%)	1195 (62.0%)	1433 (52.1%)	\$3683 (3320)
χ^2	77.13***		34.44***		77.12***		$F = 1.91$
5세이하 자녀 있음	813 (73.0%)	1874 (52.6%)	424 (55.5%)	2263 (57.8%)	977 (50.7%)	1710 (62.2%)	\$3175 (3235)
5세이하 자녀 없음	300 (27.0%)	1689 (47.4%)	340 (44.5%)	1649 (42.2%)	950 (49.3%)	1039 (37.8%)	
χ^2	145.10***		1.44		61.34***		$F = 44.22***$
5세이하 자녀 수	.95 (.76)	.69 (.79)	.70 (.75)	.76 (.80)	.66 (.77)	.81 (.79)	.
가구소득	\$25105 (25164)	\$27507 (24690)	\$29106 (25793)	\$26512 (24609)	\$28876 (30769)	\$24249 (23612)	.
공공부조 수령함	266 (23.9%)	564 (15.8%)	124 (16.2%)	706 (18.0%)	214 (11.1%)	616 (22.4%)	\$1717 (2157)
공공부조 수령안함	847 (76.1%)	2999 (84.2%)	640 (83.8%)	3206 (82.0%)	1713 (88.9%)	2133 (77.6%)	
χ^2	37.83***		1.45		99.13***		$F = 75.81***$
계	1113 (100%)	3563 (100%)	764 (100%)	3912 (100%)	1927 (100%)	2749 (100%)	1927 (100%)
전체 4676(100%)	1113 (23.8%)	3563 (76.2%)	764 (16.3%)	3912 (83.7%)	1927 (41.2%)	2749 (58.8%)	1927 (41.2%)

^a 어머니 교육수준 변수의 결측치로 인해 빈도의 합은 전체 합계와 같지 않음.

^b n=1927.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자녀양육비수령액을 산출하였음. 어머니연령, 5세이하 자녀 수, 가구소득변수는 연속변수이므로 평균 자녀양육비수령액을 산출하지 않았음.

마찬가지로 무료보육지원을 받는 가계가 받지 않는 가계보다 편모가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다. 취업한 편모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편모보다 친인척에게 자녀보육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고(Hofferth & Wissoker, 1992; Smith, 2002), 이런 경우 대부분의 친인척들이 무료로 보육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계인 경우에 5세 이하 자녀가 없는 가계보다 친인척의 무료보육지원을 받기 힘들었는데, 이는 힘들고 긴 보육시간을 요구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계보다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계에 보육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아버지로부터 자녀양육비지원을 받은 편모가계는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였다. 이혼, 별거가계보다 미혼모가계의 자녀양육비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미혼모들은 이혼, 별거 중인 편모들과는 달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자녀아버지로부터 강제적으로 지급받기 힘들기 때문이고, 또한 미혼모 자녀의 아버지들이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불할 의사가 낮고 능력도 떨어지기(Hanson, Heims, Julian, & Sussman, 1995)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은 가계의 가구소득이 지급받지 않은 가계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는 자녀양육비가 편모가계의 중요한 소득원천으로(Sorensen & Zibman, 2000)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됨을 알 수 있다.

4.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Tobit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5세 이하 자녀수, 가구소득, 공공부조 수령, 보육비 재정지원이 월평균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편모가계의 보육비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편모가 미혼모인 경우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보다 보육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미혼모들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설보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친인척보육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취업은 월평균보육비용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더 높은 보육비 지출을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Connelly & Kimmel, 2003 a; Folk & Beller, 1993; Smith,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취업한 편모들은 정기적인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보육서비스이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편모가 대학수로 이상인 가계가 고졸 이하인 가계보다 높은 월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

<표 6> 편모가계의 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obit 분석

변수	Tobit Coefficient	Standard error
상수	- 407.40***	49.99
가구 특성		
어머니 연령	- 4.91***	.85
결혼상태(미혼모)	- 30.01*	12.40
교육수준(대학수로이상)	95.89***	11.25
취업 상태(취업)	297.58***	15.39
5세 이하 자녀수	72.45***	7.86
가구소득(로그)	26.64***	3.87
공공부조 수령함	- 89.71***	16.70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보육비재정지원	142.15***	12.24
자녀양육비 수령	- 11.29	11.31
무료보육지원 ^a	- 2234.70	.
Log likelihood	- 15847.15	
Pseudo R Square	.0632	
n	4624	
Number left-censored	2533	

^a 무료보육지원 변수는 NSAF에서 자녀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즉, 왼쪽 절단된 sample에서만 측정된 변수이므로 값이 산출되지 않았다.

p* < .05. *p* < .01. ****p* < .001.

가 더 많은 보육비를 지출한다고 보고한 Hofferth와 Wissoker(1992)나 김지경(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5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많은 편모가계일수록 더 많은 보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아동보다는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더 길고(Giannarelli & Barsimantov, 2000), 대부분의 미국 보육시설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시간당 보육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앞의 연구결과에서도 5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편모가계는 보육비지출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대비 보육비비율도 높아 보육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편모가계 중에서도 특히 5세 이하 자녀수가 많은 편모가계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보육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가구소득은 월평균 보육비용과 정적인(+) 관계를 가져서 편모가계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육비지출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Giannarelli & Barsimantov, 2000; Smith, 2002; Sonenstein, Gates, Schmidt, & Bolshun, 2002)와 동일함을 보인다. 다른 지출비목들과 마찬가지로 보육비도 가구의 예산제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편모가계일수록 친

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저렴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비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저소득편모가계의 경우 적절한 보육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질이 낮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외에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공공부조 수령 변수는 월보육비용과 부적인(-) 관계를 가져서,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편모가계일수록 보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를 수급한다는 것은 그 가계가 저소득이거나 편모가 미취업상태인 것과 연결되어 보육비지출이 낮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경우 보육비재정지원 변수는 월평균 보육비용과 정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편모가계가 받지 않는 편모가계보다 보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부분의 보육비재정지원이 이미 보육비지출이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육기관의 차등보육료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육비지원이고 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등도 편모가 취업했을 때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보육비지출이 있음을 증명해야 지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비지출이 없는 편모가계의 보육비재정지원에 대한 고려와 정부나 기관의 보육비재정지원채널의 다양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의 NSAF(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1999) 자료를 이용하여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미국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자녀보육비 지출 실태와 보육비에 대한 재정적·사회적 지원의 실태를 살펴보고, 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편모가계의 절반 정도가 정기적인 보육비 지출이 있었고, 보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들의 월평균 보육비용은 \$255이었으며, 이것은 이들 편모가구소득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보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와 지출이 없는 가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보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편모 교육수준이 더 높았고 취업한 편모가 더 많았으며 가구소득도 더 높았으나 공공부조를 수령하는 가계는 적었다. 보육비지출이 있는 가계 중에서 약 40%가 보육비재정지원을 받았고, 보육비지출이 없는 편모가계 중에서는 약 30%가 친인척의 무료보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보육비 지출이 있는 편모가계만을 대상으로 가구특

성에 따른 월평균 보육비용 및 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혼모가계의 경우 이혼, 별거, 사별가계에 비해 가장 낮은 보육비를 지출하였다. 편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육비지출은 적었지만 소득대비 보육비비율은 높았으며, 편모가 종일제로 근무하는 가계의 경우 미취업 편모가계에 비해서 약 \$85정도 높은 보육비지출을 보였다.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가 5세 이하 자녀가 없는 가계보다 보육비지출의 절대액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대비 보육비 비율도 높아 보육비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건·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육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보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편모가계의 재정적·사회적 보육지원 실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편모가계의 약 25%가 정부프로그램, 보육기관, 직장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보육비재정지원을 받고 있었고, 약 16%가 친인척으로부터 보육서비스 지원을 무료로 받았으며, 41% 정도가 자녀아버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가계의 편모들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편모들보다 취업한 상태인 경우가 더 많아,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데에는 편모의 취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계가 친인척의 무료보육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하기가 더 힘들고, 취학 전이라 더 긴 시간동안 보육을 해야 하므로 친인척으로부터 무료로 보육지원을 받기 힘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편모가계의 보육비 지출에 대한 Tobit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편모 연령, 편모 결혼상태, 편모 교육수준, 편모 취업상태, 5세 이하 자녀수, 가구소득, 공공부조 수령여부, 보육비재정지원이 보육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모가 아닌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 5세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공부조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보육비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 보육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편모가계가 가구소득의 적지 않은 부분을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과 편모가계 중에서도 특히 취업 편모, 저소득,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편모가계의 보육부담이 높아 정부나 여러 기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득이 \$10,000 미만인 편모가계에서 소득대비 보육비 비율이 31%, \$10,000~20,000인 편모가계에서는 20%로 나타나, 저소득 편모가계인 경우 보육비부담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기회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2005) 가구소

득대비 보육비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보육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보육비지원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편모가계의 보육비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상향조정하여 편모가계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996년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에 관한 법안) 이후, 빈곤 편모가계가 받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고, 한시적 복지제공 프로그램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한시적 빈민지원)를 도입하여 복지혜택의 기간을 평생 5년으로 제한하고, 수혜자가 2년 후부터는 일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편모들의 노동시장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편모가계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니 만큼, 편모들이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할 때 더 보육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은 편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편모들은 비정규적인 노동시간(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시간대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주말보육과 같은 형태의 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편모들의 노동시간 스케줄을 조정해줄 수 있는 지원제도 또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에서 소득대비 보육비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Tobit분석에서는 5세이하 자녀수가 많은 편모가계일수록 보육비지출이 많아, 어린 자녀수가 보육비지출 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편모가계의 보육비지출 부담은 저출산율로 이어질 뿐 아니라, 편모들이 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편모가계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영유아를 둔 저소득 편모가계와 같은 보육지원의 요구도가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전적 수당의 형태로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미국의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결과에 대한 논의는 최근 이혼률과 여성취업률의 증가, 저출산율 등으로 인해 편모가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편모가계를 대상으로 한 보육비지원 내용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방과후교실을 이용할 때 보육료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고, 만 6세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가계와 같이 저소득층 차등보육

료지원이나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지원 등으로 보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여성가족부, 2007). 보육료의 수준은 보육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비용이어야 한다는(백선희, 2004) 우리나라 보육정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데, 양부모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육비부담이 더 큰 편모가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고, 편모가계 중에서도 저소득, 취업모 그리고 영유아가 있는 편모가계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편모가계에 대해 아동보육바우처프로그램(Child-care voucher program)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보육료 지원 수준도 상향조정하여 가계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 측면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영아(0-만2세)를 위한 보육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영아를 둔 편모가계들이 보육지원을 받는 수준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이선애, 2005). 따라서 영아를 위한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확대공급이 요구되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편모가계의 영아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어린 자녀에 대해 시설보육보다는 친인척 보육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친인척보육에 대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보육정책에 반영된다면, 편모가계의 보육비부담의 경감, 편모의 경제적 기여와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경제적 결핍으로부터의 아동보호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기대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친인척의 무료보육지원 변수가 NSAF 표집상의 제한으로 보육비지출이 없다고 응답한 편모가계에서만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친인척 보육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편모가계의 자녀보육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료로 주어지거나 보육시설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편모가계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육지원 형태 중 하나이다. 사실상 시설보육의 이용으로 정기적인 보육비지출이 있는 편모가계에서도 야간이나 휴일 등 시설보육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친인척의 보육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보육과 친인척보육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편모가계가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친인척 보육의 이용실태와 비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획득하여, 그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대별 보육비지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나, 인종이나 부모의 직업 등과 같은 변수들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백선희(2004). 보육료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6, 73-93.
- 백선희, 조성우(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서문희·조애지·김유경·최은영·박지혜(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정책보고서 2005-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 이선애(2005). 저소득가정과 영아보육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 41, 63-86.
- 이성희, 강성희(2002). 기혼직장여성의 탁아실태와 직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01-111.
- Argys, L., Peters, E., Brooks-Gunn, J., & Smith, J.(1998). The impact of child support on cognitive outcomes of young children. *Demography*, 35 (2), 159-173.
- Blank, R. M.(1988). Simultaneously modeling the supply of weeks and hours of work among female household heads. *Journal of Labor Economics*, 6(2), 177-204.
- Capizzano, J., & Adams, G.(2003).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are less likely to be in center-based child care.*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Snapshots of America's Families III No.16).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Capizzano, J., Adelman, S., & Stagner, M.(2002). *What happens when the school year is over? The use and costs of child care for school-age children during the summer month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58).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Connelly, R., & Kimmel, J.(2003a). Marital status and full-time/part-time work status in child care choices. *Applied Economics*, 35, 761-777.
- Connelly, R., & Kimmel, J.(2003b).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the employment and welfare reciprocity of single mothers. *Southern Economic Journal*, 69(3), 498-519.
- Folk, K. F., & Beller A. H.(1993). Part-time work and child care choices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 146-157.
- Giannarelli, L., Adelman, S., & Schmidt, S.(2003). *Getting help with child care expenses*(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6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Giannarelli, L., & Barsimantov, J.(2000). *Child care expenses of America's familie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40).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Han, W., & Waldfogel, J.(2001). Child care costs and women's employment: A comparison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Social Science Quarterly*, 82(3). 552-568.
- Hanson, S. M., Heims, M. L., Julian, D. J., & Sussman, M. B.(1995). Single parent families: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Marriage & Family Review*, 20(1/2), 1-25.
- Hao, L., & Brinton, M. C.(1997). Productive activities and support systems of single mother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5), 1305-1344.
- Hofferth, S., & Wissoker, D.(1992). Price, Quality, and Income in child care choic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70-111.
- Hunts, H. J., & Avery, R. J.(1998). Relatives as child care givers: After hours support for nontraditional work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9(4), 315-341.
- Jayakody, R., Chatters, L. M., & Taylor, R. J.(1993). Family support to single and married African American mothers: The provision of financial, emotional, and child care assis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261-276.
- Lino, M.(1994). Income and spending patterns of single-mother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117(5), 29-37.
- Maddala, G. S.(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Macmillan Publishing Co.
- Meyers, M., Han, W., Waldfogel, J., & Garfinkel, I.

- (2001). Child care in the wake of welfare reform: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single-mother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75(1), 29-59.
- Smith, K.(2002).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Spring 1997.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70-8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onenstein, F., Gates, G., Schmidt, S., & Bolshun, N. (2002). *Primary child care arrangements of employed parents: findings from the 1999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59).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Sorensen, E., & Zibman, C.(2000). Child support offers some protection against poverty.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Series B, No. B-10).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U.S. Bureau of the Census.(1971).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71 (92nd edition)*. Retrieved October 10, 2005, from <http://www2.census.gov/prod2/statcomp/documents/1971-01.pdf>
- U.S. Bureau of the Census.(2005).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4-2005 (124th edi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al Administration.
- Woodhouse, S.(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 care cost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test sco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erkeley, California

(2007년 9월 29일 접수, 2007년 12월 12일 채택)